

	<h2>사회봉사 운영 규정</h2>		문서번호	3-1-30	
			제정일	2014. 02. 03.	
			개정일	2020. 12. 31.	
	페이지	1/3	관리 부서	사무처	

제 1 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여자간호대학교(이하 “본 대학”)의 교육이념인 진실, 순결, 희생의 정신을 구현하고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돌봄을 실천하는 사회적 책무를 완수하기 위한 교직원 및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장 사회봉사 운영위원회

제2조(운영위원회) 학생 및 교직원 사회봉사 활동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봉사 운영위원회(이하 위원회)를 둔다.

-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대학구성원 중에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,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된다.
-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 총괄업무는 사무처에서 관장하며, 간사는 사무처 직원이 된다.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- ① 사회봉사 지원 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
- ② 교직원, 학생의 사회봉사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③ 사회봉사 활동의 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
- ④ 기타 사회봉사 활동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

제4조(회의)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

-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
제 3 장 교직원 사회봉사활동

제5조(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) 교직원의 사회봉사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 활동
- ② 비영리 민간 및 공공단체 지원 활동
- ③ 대학의 각종 평가 및 교육개혁 관련 활동
- ④ 공공기관 의뢰, 교육, 강연, 평가, 출제, 심의위원 활동

	<h2 style="margin: 0;">사회봉사 운영 규정</h2>		문서번호	3-1-30	
			제정일	2014. 02. 03.	
	개정일	2020. 12. 31.			
	페이지	2/3	관리 부서	사무처	

- ⑤ 국내외 학회 임원 및 학술지 편집위원
- ⑥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, 교육 및 특별 강연
- ⑦ 산업체 기술경영 지도 및 자문
- ⑧ 학생 봉사활동 지도
- ⑨ 기타 위원회에서 개발 및 인정하는 각종 사회봉사 활동

제6조(교직원 사회봉사활동 지원) 대학은 사회봉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봉사 활동에 필요한 예산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사회봉사활동 실적 관리) 사회봉사 활동 실적은 교수업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라 평가·관리한다.

제 4 장 학생 사회봉사활동

제8조(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영역) 학생의 사회봉사 활동 영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
-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사회복지 시설 및 기관 봉사활동(노인복지시설, 장애인 복지시설, 보육시설, 지역사회 복지관 등)
- ② 공공기관 봉사활동
- ③ 사회공익 봉사활동
- ④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인가 받은 봉사기관에서 실시하는 봉사활동
- ⑤ 지역사회 봉사활동(농촌봉사활동, 수해지구 봉사활동 등)
- ⑥ 가정복지 봉사활동(장애인 가정, 무의탁 노인, 소년소녀 가장 세대의 봉사활동 등)
- ⑦ 공인기관(대학사회봉사협의회, 한국장학재단 등)에서 실시하는 해외 봉사활동
- ⑧ 교내봉사(교내 각 부서, 센터 등)
- ⑨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개발 및 인정하는 사회단체 기관 및 시설에서의 봉사활동

제9조(학생의 사회봉사활동 지원) 대학은 위원회의 심의, 평가를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10조(재해발생 시 책임) 학생이 사회봉사 기간 중 상해를 입거나 봉사기관에 인적 또는 물적 손해를 발생시켜 청구가 있는 경우 학생 본인이 비용부담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. 단, 우리 대학의 상해보험으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	<h2>사회봉사 운영 규정</h2>	문서번호	3-1-30		
		제정일	2014. 02. 03.		
		개정일	2020. 12. 31.		
		페이지	3/3	관리 부서	사무처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